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구합3016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
원 고 [redacted]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[redacted])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,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장

변 론 종 결 2020. 8. 13.

판 결 선 고 2020. 9. 10.

주 문

1. 피고가 2018. 3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,929,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,193,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6. 2. 22.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 [redacted]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. 2. 22. 위 사업을 준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, 이 사건 사업부지 20,862㎡ 중 그 전부터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 9,766.29㎡(이하 '이 사건 대지'라 한다)에 대한 공사비 990,141,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,095,712,8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,957,12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7. 12. 13. 이루어진 [redacted]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, 2018. 3. 9.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대지가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면서,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소요된 공사비 990,141,5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12,929,260원(가산세 포함) 및 농어촌특별세 1,193,910원(가산세 포함)을 각 결정·고지하였다(이하 취득세 부분을 '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'이라 하고,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'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'이라 하며, 둘을 합하여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. 6. 28. [redacted]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. 11. 5. 기각결정을 받았고, 2019. 2. 7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20. 1. 7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. 설령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대지의 가치상승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적용할 수 있더라도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이 이미 있던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바,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. 그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납세의무자, 과세물건, 과세표준,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,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·적용하여야 하며,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(대법원 2017. 4. 20.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,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누6352 판결 등 참조)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대지의 경우 이 사건 사업 시행 전후 지목이 '대(대)'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,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시행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라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'공간정보의 구축 및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(대)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'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'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'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, 위 조항이 2019. 12. 31. 개정되면서 '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(대)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·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'라고 규정형식을 바꾼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. 즉, 위 조항은 종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것임을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.

3)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 전후로 지목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, 지방세법은 제10조 제3항에서 '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'의 과세표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,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바,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을 과세표준으로 한 점에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4) 또한 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납세의무에 대한 세율이 규정되지도 않았는바,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5) 이처럼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,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별지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세법

제6조(정의)

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9. "중과기준세율"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.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④ 선박,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.

⑭[1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 따른 대(대)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.

제10조(과세표준)

③ 건축물을 건축(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)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,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취득(증여·기부, 그 밖의 무상취득 및 「소득세법」 제101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3. 판결문·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

제15조(세율의 특례)

②[2]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다만,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,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.

2.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·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.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.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17조(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)[3]

1) 구 지방세법.
2) 2016. 12. 27.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8조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.

1.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(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·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)
2.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(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)

제18조(취득가격의 범위 등)

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판결문: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(화해·포기·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
2. 법인장부: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·보조장·출납전표·결산서. 다만,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(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)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.

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67조(지목의 종류)

① 지목은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·광천지·염전·대(대)·공장용지·학교용지·주차장·주유소용지·창고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제방(제방)·하천·구거(구거)·유지(유지)·양어장·수도용지·공원·체육용지·유원지·종교용지·사적지·묘지·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6. 12. 30.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8조(지목의 구분)

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8. 대

가.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·사무실·점포와 박물관·극장·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

3) 2016. 8. 31. 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0-26

나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

■ 농어촌특별세법

제3조(납세의무자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5.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
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

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

호별	과세표준	세율
6	「지방세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	100분의 10